

제 호

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

- 기업명: (사업자등록번호)
- 대표자:
- 소재지:
- 유효기간:

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